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6월 30일부터 시행

- 부당특약금지 등 하도급자 보호규정 신설 등 협회 건의내용 반영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9875호, 2009.12.29)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하도급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 규정 신설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하도급자의 보호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회원사가 하도급계약 시 각종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 부당특약과 불공정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1. 법률 제9875호(2009.12.29)

2. 개정 주요내용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 신설(제38조제2항신설)

개정전	개정후
〈신 설〉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 확대(제35조제1항제3호)

개정전	개정후
<p>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략)</p> <p>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p> <p>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p> <p>〈신설〉</p>	<p>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_____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_____</p> <p>1의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p>

■ 민간공사 발주자까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공사금액의 조정 통보의무 확대(제36조제2항)

개정전	개정후
<p>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② 발주자는 _____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_____.</p>

■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 시 과태료 규정 신설(제99조제7의2신설)

개정전	개정후
<p>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신설〉</p>	<p>제99조(과태료) _____</p> <p>7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p>

■ 「주택법」 및 건설업과 관련된 「형법」 상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함(제13조제1항)

개정전	개정후
<p>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p> <p>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p> <p>〈신 설〉</p> <p>〈신 설〉</p>	<p>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p> <p>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 건설공사대장 발주자통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처분(제81조, 제99조)

개정전	개정후
<p>제81조(시정명령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신 설〉</p>	<p>제81조(시정명령 등) _____</p> <p>_____</p> <p>_____</p> <p>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p> <p>제99조(과태료) _____</p> <p>_____</p> <p>9.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p>

■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및 과징금 상한액 상향(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제83조제5호의2)

개정전	개정후
<p>〈신 설〉</p> <p>제82조(영업정지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p>	<p>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제82조(영업정지 등) ①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개정전	개정후
<p>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u>5천만원</u>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1호의2·제3호·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right;">1억원</p> <p>1. 2. (생략)</p> <p>2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때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p> <p style="text-align: right;">5호부터 제7호까지</p> <p>1. ~ 5. (생략)</p> <p>5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p>

3. 시행일

- 이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남극의 빙하

지구 육지의 평균 해발 고도는 8백57m다. 남극 대륙에는 세계 얼음의 90%가 있는데, 만약 이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약 90m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물이 넘쳐 육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극 얼음의 평균 두께는 3km 이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1천만 년 동안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남극의 얼음은 북극이나 알프스의 빙하와 달리 온도가

영하 수십 도로 매우 낮아서 녹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남극의 얼음이 앞으로 1천 년간은 녹을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실효과가 유발되고 해가 갈수록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등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